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박한범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정이유

-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사용허가의 제한(안 제4조)
- 사용허가의 취소(안 제5조)
- 사용료의 감면(안 제7조)
- 사용료의 납부(안 제8조)
-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삭제(10조)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근거 법률을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로 변경하고,

사용허가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사용료의 전부감면사유와 경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시설사용의 확대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의 변경, 사용허가의 제한과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도민을 위한 교육기관의 개방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